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1. . . (제 회)	

관 광 진 흥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가. 현행 여행업 규제는 단체관광 중심의 종합여행서비스 규제에 적합하여 최근 관광추세가 개별여행 중심으로 변화하고 단품이나 개인 취향 맞춤형 여행상품 수요가 증가하는 여행시장 환경에 적합하지 않음
- 나. 이에 여행환경 변화에 맞추어 기존 여행 업종의 등록요건의 완화, 업종 통합 등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소규모 창업을 촉진하며, 영업불편을 해소하여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 감염병 확산으로 매출액 또는 고용의 감소 등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가 계속되는 경우,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카지노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영업범위의 제한이 없이 종합적으로 여행상품을 제공하는 “일반여행업”의 명칭을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종합여행업”으로 변경함(안 제2조제1항제1호가목)
- 나. “국외여행업”을 “국내외여행업”으로 변경하여 국외 및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여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국외여행업과 국내여행업을 각각 등록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국외여행업과

국내여행업을 모두 영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1항제1호나목)

다. 제1급 감염병 확산으로 문체부 장관이 정하는 매출액 또는 고용의 감소 등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가 계속되는 경우,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6조에 의한 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이내의 기한을 정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제6항 신설)

라. 제30조제6항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45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30조제7항 신설)

마. 종합여행업의 자본금 등록요건을 1억원에서 5천만원으로 인하하고
국외여행업을 국내외여행업으로 변경 등 등록기준 변경(안 별표1)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9. . ~ 9.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가목 중 “일반여행업”을 “종합여행업”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국외여행업”을 “국내외여행업”으로 한다.

제30조 제6항부터 제7항까지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 감염병 확산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매출액 또는 고용의 감소로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가 계속되는 경우,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6조에 의한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이내에 기한을 정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카지노사업자가 제6항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45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1 중 “가. 일반여행업”을 “가. 종합여행업”으로, 자본금 “1억원”을 “5천만원”으로 변경하고, “나. 국외여행업”을 “나. 국내외여행업”으로 변경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2조, 별표 1의 개정 사항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 -----.
1. 여행업의 종류	1. -----
가. <u>일반여행업</u> :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사증(査證)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가. <u>종합여행업</u> ----- ----- ----- ----- -----
나. <u>국외여행업</u> : 국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사증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나. <u>국내외여행업</u> ----- ----- ----- ----- -----
다. (생략)	다. (현행과 같음)
2. ~ 6. (생략)	2. ~ 6. (현행과 같음)
제30조(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의 납부금 등) ①~⑤ 생략 <u><신설></u>	제30조(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의 납부금 등) ①~⑤ (현행과 같음)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 <u>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u> 」 제2조 제2호에 따른 제1급 감염병 확

<신 설>	산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매출액 또는 고용의 감 소로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가 계속되는 경우, 관광진흥개발 기금법 제6조에 의한 기금운용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이내 에 기한을 정해 납부 기한을 연 장할 수 있다. ⑦ 카지노사업자가 제6항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에는 납부기한의 45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제5조 관련) 1. 여행업 가. 일반여행업 (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 <u>1억원</u> 이상 일 것 (2) 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 권이 있을 것 나. 국외여행업 (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 3천만원 이 상일 것 (2) 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 권이 있을 것 다. 국내여행업	별표 1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제5조 관련) 1. 여행업 가. 종합여행업 (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 <u>5천만원</u> 이 상일 것 (2) 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 권이 있을 것 나. 국내외여행업 (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 3천만원 이 상일 것 (2) 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 권이 있을 것 다. 국내여행업

(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 1,500만원 이 상일 것 (2) 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 권이 있을 것 2. ~ 5. (생략)	(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 1,500만원 이 상일 것 (2) 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 권이 있을 것 2. ~ 5.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	
연 락 처	(044) 203 - 2885